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호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929

발의연월일: 2025. 4. 17.

발 의 자: 안호영·박지원·한민수

신영대 • 박홍배 • 이학영

박 정ㆍ김태선ㆍ전진숙

강득구 • 이춘석 • 박해철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근로자의 경제·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,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 그런데 현행법의 규율 대상은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어, 고용형태의 다양화 및 기술발전 등으로 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또한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이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제도의 확대 이외 에도 근로자 등의 공제조합 설립·운영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.

이에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노동공제조합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

근로자 등의 복지를 더욱 증진하고자 함(안 제4장의2 신설 등).

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근로복지정책에는 근로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 등이 공제 단체를 자주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 원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제9조제2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의2. 노동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의2(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12까지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장의2 노동공제조합

제92조의2(노동공제조합의 설립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"근로자등"이라 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근로조건의 개선, 복지증진 및 근로자등 간의 상부상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제조합(이하 "노동공제조합"이라 한다)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근로자

- 2.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(이하 "특수형태근로종사자"라 한다)
- ② 노동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.
- ③ 노동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.
- ④ 노동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92조의3(노동공제조합의 가입 등) ① 노동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근로자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단체의 대표자로한다.
 - ② 노동공제조합에 가입하려는 자는 노동공제조합과 공제부금납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제92조의4(노동공제조합의 조직) ① 노동공제조합은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이사회를 두고,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, 감사기관(監査機關)으로서 감사(監事)를 둔다.
 - ② 노동공제조합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.
- 제92조의5(노동공제조합의 운영 등) ① 노동공제조합은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.

- ② 노동공제조합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해서 노동공제조합에 공제운영위원회를 둔다.
- ③ 노동공제조합의 운영 방법·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공제운영위원 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92조의6(노동공제조합의 사업 등) ① 노동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 - 1. 조합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의 지급
 - 2. 조합원을 위한 대출
 - 3. 조합원을 위한 복지 후생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업
 - 4. 제92조의7에 따른 노동공제기금의 조성 및 운용
 - 5. 조합원과 조합원이 아닌 자를 위한 사회 연대 사업
 - 6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
 - ② 노동공제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 - ③ 노동공제조합은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공제사업을 행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- 제92조의7(노동공제기금의 조성) 노동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노동공제조합의 운영과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공제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.

- 1. 조합원이 납부하는 공제부금
- 2. 노동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
- 3. 노동공제조합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
- 4. 노동공제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- 제92조의8(공제금수급계좌) ① 노동공제조합의 수급자는 공제금을 본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(이하 "공제금수급계좌"라 한다)에 입금하도록 노동공제조합에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노동공제조합은 공제금을 공제금수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.
 - ② 노동공제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제금을 공제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다.
 - ③ 공제금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공제금만이 공제금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,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.
 - ④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·절차와 제3항에 따른 공제금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92조의9(수급권의 보호) ①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 다만, 노동공제조합으로부터 대 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전에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노동공제조합은 공제금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.

- ② 공제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.
- 제92조의10(준비금의 적립) ① 노동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장래에 지급할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·운용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92조의11(경영지원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공제조합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경영·기술·세무·노무(勞務)·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92조의12(「보험업법」의 적용 배제) 노동공제조합에 관하여는 「보험업법」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.
- 제93조제2항 중 "수탁기관"을 "수탁기관, 노동공제조합"으로 한다. 제95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 - 1. 특수형태근로종사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)	제3조(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)
① ~ ③ (생 략)	① ~ 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근로복지정책에는 근로복지
	의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 등이
	공제단체를 자주적으로 설립하
	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정적
	•재정적 지원 방안이 포함되
	<u> 어야 한다.</u>
제9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(생	제9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(현행
략)	과 같음)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	②
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9의2. 노동공제조합의 설립 및
	<u>운영에 관한 사항</u>
10.・11. (생 략)	10.・11. (현행과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4장의2 노동공제조합
<u> <신 설></u>	제92조의2(노동공제조합의 설립
	<u>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</u>
	<u>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"근로</u>
	자등"이라 한다)는 대통령령으
	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
	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근로조

건의 개선, 복지증진 및 근로자 등 간의 상부상조를 주된 목적 으로 하는 공제조합(이하 "노 동공제조합"이라 한다)을 설립 할 수 있다.

1. 근로자

- 2.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(이하 "특수형태근로 종사자"라 한다)
- ② 노동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.
- ③ 노동공제조합은 주된 사무 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 으로써 성립된다.
- ④ 노동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<u>제92조의3(노동공제조합의 가입</u> <u>등) ① 노동공제조합에 가입할</u>

<신 설>

<신 설>

수 있는 자는 근로자등 및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단 체의 대표자로 한다.

② 노동공제조합에 가입하려는 자는 노동공제조합과 공제부금 납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제92조의4(노동공제조합의 조직)
① 노동공제조합은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이사회를 두고,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이사를 두며, 감사기관(監査機關)으로서 감사(監事)를 둔다.

② 노동공제조합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 구와 직원을 둔다.

제92조의5(노동공제조합의 운영 등) ① 노동공제조합은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 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.

② 노동공제조합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해서 노동공제조합에 공제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③ 노동공제조합의 운영 방법
•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공제

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92조의6(노동공제조합의 사업 등) ① 노동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 - 1. 조합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의 지급
 - 2. 조합원을 위한 대출
 - 3. 조합원을 위한 복지·후생시 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업
 - 4. 제92조의7에 따른 노동공제 기금의 조성 및 운용
 - 5. 조합원과 조합원이 아닌 자 를 위한 사회 연대 사업
 - 6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
 ② 노동공제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 - ③ 노동공제조합은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공제사업을 행하는 것을 제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

<u><신 설></u>

주어서는 아니 된다.

제92조의7(노동공제기금의 조성) 노동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노동공제조합의 운영 과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 는 노동공제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.

- 1. 조합원이 납부하는 공제부금
 2. 노동조합 등 대통령령으로
 정하는 단체 및 그 밖의 자의
 출연금
- 3. 노동공제조합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
- 4. 노동공제기금의 운용으로 발 생하는 수익금

제92조의8(공제금수급계좌) ① 노동공제조합의 수급자는 공제금을 보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 (이하 "공제금수급계좌"라 한다)에 입금하도록 노동공제조합에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노동공제조합은 공제금을 공제금수급계좌로 입금하여야한다.

② 노동공제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장애나 그

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 가피한 사유로 공제금을 공제 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금 을 지급할 수 있다.

- ③ 공제금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공제금만이 공제금 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,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· 절차와 제3항에 따른 공제금수 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92조의9(수급권의 보호) ① 퇴 직연금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 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 공할 수 없다. 다만, 노동공제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 가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전에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 노동공제조합은 공제 금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공제 할 수 있다.

② 공제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.

<신 설>

<신 설>

제93조(지도·감독 등) ① (생 제93조(지도·감독 등) ① (현행 략)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② ------

제92조의10(준비금의 적립) ① 노 동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장래 에 지급할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 · 운용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 립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92조의11(경영지원) ① 고용노 동부장관은 노동공제조합의 설 립・운영에 필요한 경영・기술 ・세무・노무(勞務)・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92조의12(「보험업법」의 적용 배제) 노동공제조합에 관하여 는 「보험업법」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.

과 같음)

사업주, 융자업무취급기관, 우리사주조합, 제43조에 따른 수 탁기관 및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 제 출을 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 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, 소 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 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·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③ ~ ⑤ (생 략)

제95조의2(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

<u>수</u>
탁기관, 노동공제조합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세95조의2(특수형태근로종사자
등에 대한 특례) ①
1. 특수형태근로종사자

<u>는 사람</u>	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